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75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 사용허가, 시설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2조).

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소속 직원 및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정함(안 제3조).

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등)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수련 활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련원의 사용자들에게 시설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학생의 사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4. 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학생수련 및 교직원 연수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5조(사용허가) ① 해양수련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학생 해양수련활동 등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해양수련원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배상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사용구분		사 용 료			
		학 생	교직원 및 그 가족	일반인	비 고
숙 박 비	학생 숙소 1인1숙	2,000	20,000 (30,000)	30,000 (40,000)	※()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용료임. ※ 콘도형 숙소는 기준인원(원룸:3인, 투룸:5인)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침구사용료)
	콘도형 원룸 (26.4㎡) 1실 1숙		30,000 (40,000)	40,000 (50,000)	
	투룸 (42.9㎡) 1실 1숙		40,000 (50,000)	50,000 (60,000)	
식 비		4,000	6,000	6,000	※1실 1박 기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관	강당	무료	무료	200,000	※1일 사용료임.
	종합강의실	무료	무료	100,000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종합강의실을 유료 대관시 냉·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며 이 경우 강당은 시간당 5,000원, 종합강의실은 2시간 이하 2,000원, 2시간 초과시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 유사시설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윤길재	윤길재	
2	신광응	신광응	
3	가동태	가동태	
4	권문익	권문익	
5	송리호	송리호	
6	주원재	주원재	
7	최종민	최종민	
8	박재호	박재호	
9	장기현	장기현	
10			
11			
12			
13			
14			
15			